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6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구자근
김대식 · 박성훈 · 조경태
김태호 · 정동만 · 곽규택
백종헌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체육활동 이용권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참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체육강좌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시설

4.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프로그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공공·민간 체육시설, 학교,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부정사용 방지, 이용실적 관리 및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범위, 시설 연계,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중 “유소년의 체육 활동”을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3(체육활동 이용권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참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체육강좌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u></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p>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

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하는 체육활동 시설 또는 프

로그램과 생활체육시설

4.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체육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이용권의 원활한 사

용을 위하여 공공·민간 체육

시설, 학교, 체육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이용권의 부정사용

방지, 이용실적 관리 및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관

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

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1. (생략)

11의2. 노인 및 청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 12. (생략)

② ~ ④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범위, 시설 연계,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11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